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41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김태호 · 윤영석 · 조승환
이인선 · 박충권 · 최형두
김기현 · 김기웅 · 김성원
신성범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5킬로미터”를 “5킬로미터(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반지름 15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u>5킬로미터</u>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 ----- ----- <u>----5킬로미터(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반지름 15킬로미터)--</u> ----- ----- ----- ----- ----- ----- -----